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6. . . (제 회)	

발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()
제출연월일	2016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특허지원창구의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지역지식재산센터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며,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원 사업 등을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요건 강화(안 제8조의6 신설 및 별표5 개정)

나.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9 신설)

- 1) 인증기준을 구체화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함
- 2) 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
- 3)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기준을 정하고 지정 시 기관을 고시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6(지역지식재산센터의 그 밖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사업)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사업이란 「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사업 등을 말한다.

제9조의4부터 제9조의8까지를 각각 제9조의10부터 제9조의14까지로 하고, 제9조의4부터 제9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4(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신청)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(이하 "인증"이라 한다)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인증신청서에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에 관한 현황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의5(인증기준) ①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식재산 경영체계를 구축·운영하고 있을 것
2. 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 및 활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것

것

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세부기준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9조의6(인증의 유효기간)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.

제9조의7(인증서의 교부 등) ① 특허청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별표6호의2의 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포장 또는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다.

제9조의8(인증비용의 징수) ①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인증심사 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
2. 인증심사를 위한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9조의9(인증업무 운영기관의 지정) ① 특허청장은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기관을 인증업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 것

2. 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

3.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위한 교육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

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별표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5]

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 (제9조제2항 관련)

1. 상담실 및 사무공간을 갖출 것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

가. 변리사, 기술사, 기술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

나. 기술 또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

다. 기업기술가치평가사, 특허정보분석사, 특허정보검색사 등 지식재산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, 지식재산 관련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

라. 대학의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지식재산 관련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

마. 기타 위와 동등한 것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자

별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

별지 제3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			
기업명			대표자
기업규모	<input type="checkbox"/> 소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중기업		종업원 수
사업자등록번호			설립일
기업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기업		법인등록번호 (법인기업인 경우)
업종	(산업분류코드 : □□□□□)		
주 생산품			
최근 매출액			최근 수출액
주요 수출국			
주소 (본사 기준)			
담당자	성명		소속부서
	직위		e-mail
	전화		Fax
<p>발명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신청하오니 지식재산 경영 기업으로 인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 신청일 :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: (서명 또는 인) 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 font-size: 1.2em;">특허청장 귀하</p>		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별지 제3호의3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지식재산경영기업 인증서

기업명 :

대표자명 :

인증번호 :

유효기간 :

위 기업은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제2항 및
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식재산경영기
업임을 인증합니다.

년 월 일

특허청장

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8조의6(지역지식재산센터의 그 밖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사업)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사업이란 「창조경제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사업 등을 말한다.
<u><신 설></u>	제9조의4(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인증의 신청)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(이하 "인증"이라 한다)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인증신청서에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에 관한 현황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u>제9조의4 (생 략)</u>	<u>제9조의10</u> (현행 제9조의4와 같음)
<u><신 설></u>	제9조의5(인증기준) ①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9조의5 (생략)

<신설>

제9조의6 (생략)

<신설>

1. 지식재산 경영체계를 구축·운영하고 있을 것

2. 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 및 활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것

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세부기준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9조의11 (현행 제9조의5와 같음)

제9조의6(인증의 유효기간)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.

제9조의12 (현행 제9조의6와 같음)

제9조의7(인증서의 교부 등) ① 특허청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별표6호의2의 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포장 또는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다.

제9조의7 (생략)

<신설>

제9조의8 (생략)

<신설>

제9조의13 (현행 제9조의7와 같음)

제9조의8(인증비용의 징수) ① 법제24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인증심사 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
2. 인증심사를 위한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9조의14 (현행 제9조의8와 같음)

제9조의9(인증업무 운영기관의 지정) ① 특허청장은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기관을 인증업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 것
2. 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
3.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력을

위한 교육체계가 구축되어 있을
것

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
증업무 운영기관을 지정할 때에
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재산정책과	
연 락 처	042-481-8180